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종모*

< 목 차 >

- I. 서론
- II. 리걸테크의 동향
- III. 법률서비스의 특질과 진입규제
- IV. 파괴적 혁신의 방향과 시사점
- V. 결론

I. 서론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열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초래할 위협에 대한 우려가 교차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2017년의 10대 전략 기술의 최상위에 올려놓았다.¹⁾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갖가지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가시적 성과물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관념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케 한다. 법률분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서비스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과 웹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이후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거나 법률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법률서비스 분야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https://www.gartner.com/doc/3471559?srcId=1-8485921392&stl=0>.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 서비스 영역 고유의 제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서비스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법률서비스 영역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혁신은 하드웨어적인 개선을 뛰어넘어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함의가 있다. 최근 법률시장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인해 법률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성 높은 법률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로스쿨 개원에 따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는 길은 차별화된 경쟁력인데, 리걸테크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러한 법률시장의 구조 변화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변호사 진입 장벽이나 법조지역과 유사 지역간의 충돌로 인해 논쟁이 빈번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파괴적 혁신 또한 기존 법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극복하여야 할 큰 과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과 인터넷 등이 촉발시킨 소위 리걸테크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리걸테크로 인하여 법률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러한 변화가 가지는 법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률서비스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기존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전히 변혁함으로써 기존의 법률시장의 한계로 지적되던 법률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법률서비스 분야는 그 복잡성이나 대면 위주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식서비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늦었지만, 최근에는 다채로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는 기존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 것과 아예 대체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서비스의 개선은 변호사의 업무효율을 추구하는 효율성 증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 반면, 기존 법률서비스의 대체는 기존 변호사들이나 로펌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변호사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형태를 종식시키고, 아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법률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성격도 현재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리걸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법률시장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리걸테크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해외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는 절실하다.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이 법률영역에 대한 신뢰성 제고나 법률서비스 고도화와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걸테크를 이용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리걸테크의 동향

1. 리걸테크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이 번성하고 있으며,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의 리걸테크 스타트업 기업은 약 600개에서 1,400개로 추산되는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과 독창성 면에서 괄목할 만하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법률검색과 같이 거대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미 확립된 분야 외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²⁾ 이러한 리걸테크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여러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문서자동화 서비스, 법률검색 서비스, 전자증거개시 등에서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2. 문서자동화 서비스(legal automation)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주차위반 딱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작성을 도와주는 DoNotPay.co.uk라는 무료 온라인 챗봇(Chatbot)을 개발하였다.³⁾ 주차위반 딱지가 부당하다고 믿는 운전자들은 이의신청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형적인 이의신청 처리과정과 달리 운전자들은 변호사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법조항을 직접 찾아볼 필요도

2) Robert J. Ambrogi, "A Golden Age of Legal Tech Start-Ups", 43 Law Prac. 34 2017, p.36.

3) Joanna Goodman, "Meet the robot lawyers and virtual assistants", RACONTEUR 2016.6.29, p.4.

없지만 서면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챗봇이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의신청 서면이 작성되고, 소관 법률관서에 자동으로 제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무료다.⁴⁾ 이것은 주차위반 딱지 이의신청 서비스 제공에만 그치지 않는,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 서비스를 굳이 분류하자면 문서자동작성(document automation) 프로그램이고, 머신러닝이나 첨단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부울 규칙(Boolean rule)이라는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여 포함되어야 할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식인데도 매우 생산적이다.⁵⁾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이 있긴 하다. 대법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나홀로 소송’ 서비스도 그 중의 하나이며,⁶⁾ 일반 법률사무소에서도 소송서면 작성 서비스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상업적 서비스로는 일상적인 계약문안을 검토하여주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LawGeex가 있는데, 그 주된 기능은 계약문건에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이상한 조항을 색출하고, 누락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용절감과 더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⁷⁾

3. 법률검색 분야(Legal Research)

법률검색 분야는 여러 법률 서비스 영역 중에서 혁신이 두드러진 곳이다.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는 이론과 실제 양쪽의 동인(動因)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법률검색 모델은 실제적인 면을 반영하고,⁸⁾ 법적 추론 모델은 이론적 면을 반영한다.⁹⁾ 본래 법률검색분야는 후술하는 Document Review와는 달리 방대한 여러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 소모적

4) Drew Simshaw, “Robot Lawyers: Improving Access To Justice With Renewed Commitment To Ethical Obligations”, p.1., <http://www.werobot2017.com/wp-content/uploads/2017/03/Simshaw-Robot-Lawyers-DRAFT-2017-03-20-1.pdf>.

5) Michael Mills, “Using AI In Law Practice: It’s Practical Now”, 42Law Prac. 48 2016, p. 50.

6)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7) Disruptlegal, “LawGeex: Free, Easy-To-Use Contract Review Software”, <https://disrupt.legal/2016/06/07/lawgeex-free-easy-to-use-contract-review-software/>.

8) L. Thone McCarty, “AI and Law: How to Get There from Here”, Ratio Juris. Vol. 3. No.2 July 1990, p.190.

9) id. at 195.

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다.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 법률검색 분야에 적용되면서 텍스트와 키워드 기반으로 이루어 지던 법률검색은 효율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미국의 로펌들은 수십억 달러를 법률검색 서비스에 지출한다. 법률정보는 공공 영역의 재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나 법제처, 국회도서관 등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검색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법률정보가 아닌 보다 향상된 검색 기능과 가치가 증대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미국의 많은 로펌에서는 법률검색에 비중을 두고, 고용변호사들이 뛰어난 검색능력을 갖기를 기대한다.¹⁰⁾ 심지어 상당수의 대형 로펌에는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는 사서를 두고, LexisNexis, Bloomberg, RIA, BNA가 제공하는 법률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소형 로펌의 경우나 단독개업변호사의 경우 예산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¹¹⁾ Casetext의 경우, 이러한 법률검색 시스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파괴적 혁신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바로 클라우드(cloud) 기반의 주석(Annotation) 플랫폼의 제공인데, 이 플랫폼 위에서는 많은 프리랜서 전문가가 여러 법률문헌에 다양한 형태의 유용한 주석을 단다.¹²⁾ 집단지성의 공익적 서비스 모델인 셈인데, 이와 같이 미국에서 법률검색 분야는 그 혁신과 변화의 모습이 다양하여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등장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검색 시스템이 존재하였고 시스템 운영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형태나 질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의 법률검색 시스템이 대법원이나 법제처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West Publishing과 같은 출판기업에 의하여 개발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접착지기 전부터 법률검색 시스템은 법률서비스 분야의 중심이었고, 법률공보 등 종이 기반의 법률정보 전달 시스템은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상황이다. West Publishing도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시대의 변화

10) Simon Canick, "Infusing Technology Skills into The Law School Curriculum", 42 Cap. U. L. Rev. 663 2014, p.700.

11) id. at 701.

12) Wefunder, "CASETEXT making all the world's laws free and understandable", <https://wefunder.com/casetext>.

에 순응하지 못하여 한때 법률검색 시장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명성에 흠이 가기도 했지만,¹³⁾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진 끝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고, LexisNexis, Bloomberg, RIA, BNA와 같은 기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전자증거개시(Electronic Discovery)

전자증거개시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소송의 반대당사자로부터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¹⁴⁾ 증거개시는 영미법계 국가의 소송절차의 특징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변론 전 절차를 의미한다.¹⁵⁾ 배심원 재판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정식재판 전에 소송의 양측에게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의미로 증거개시를 강제하고 있다.¹⁶⁾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측은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수많은 자료 중에서 소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 모두를 찾는 합리적인 검색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전자적 자료의 방대성은 증거개시절차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측과 요구받는 측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¹⁷⁾ 소송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 자료 외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방어에 관계되는 어떠한 자료라도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개시 범위가 꽤 넓다.¹⁸⁾ 증거개시를 위한 문서검토(Document Review)는 정보검색이라는 점에서 전술한 법률검색과 유사하면서도 소송당사

13) Taryn Marks, "John West and the Future of Legal Subscription Databases", 107 Law Libr. J. 377 2015, p.383.

14) Nicholas Barry, "Man Versus Machine Review: The Showdown between Hordes of Discovery Lawyer and a Computer-Utilizing Predictive-Coding Technology", 15 Vand. J. Ent. & Tech. L. 343 2012-2013, p.346.

15) 안정혜,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8, 68면.

16) Robert D. Cooter·Thomas Ulen/한순구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522면.

17) 김도훈,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대한 연구-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2, 221면.

18) 황경환, "미국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의 증거개시제도의 연구", 「한양법학」 제22집, 한양법학회, 2008.2, 480면.

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제출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전자적 자료도 포함되는데, 전자적 자료는 쉽게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의 검색과 수집 그리고 검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전자적 증거개시의 현실은 극도로 부담스럽고,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소송의)수단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이러한 전자 증거개시와 관련한 문서검토 비용의 절감 방안 모색은 predictive coding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문서 검토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predictive coding은 자연언어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전자 증거 데이터 세트를 반자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predictive coding은 단순한 keyword 검색보다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으로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류, 선택, 스레딩(threading)을 포함한다. 대략의 과정을 보면 의미검색, 키워드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 데이터 샘플을 받아 수동적으로 검토하면서 부호화(coding)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predictive coding은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의 예측 기술을 사용하여 부호화된 문서를 가지고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킨다. 그 후 연관성을 기준으로 연관성이 낮은 문서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정제작업을 거친다.²⁰⁾ 또 중복 파일을 제거하여 증거개시 분량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삭제된 파일도 복원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²¹⁾ 전자증거는 한곳에 있기 마련인 종이문서와는 달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predictive coding은 여러 곳에 분산된 각 부문에서 관련된 문서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predictive coding은 전자 증거개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러한 predictive coding은 2012년부터 리걸테크의 첨병역할을 해오고 있다.²²⁾ Recomind, Equivio, ContentAnlyst와 같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문서검색 도구를 개발하고, 라이선스하고 있다. predictive coding은 변호사에 의한 수동적 검토보다

19) Matthew Young, "To Cure the E-Discovery Headache, Revamp the Rule 26(f) Discovery Conference", 12 Nw. J. & Intell. Prop. I 2014, p.355.

20) Nicholas Barry, supra note 14, at 354.

21) id. at 347.

22) id. at 363.

신속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비용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²³⁾ 따라서 법원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동화된 수단인 predictive coding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²⁴⁾

5. 소규모 법률서비스·자문(Brief Service And Advice)

1) 서비스 분업화(分業化) 현상

하나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게 하고 전체적인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소장 작성 등 특정 서비스로 나누어서 과금하는 식의 서비스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분업화가 일반적이지 않고, 시장 지배자가 아닌 일부 변호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지만,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인터넷과 웹의 등장은 인터넷 플랫폼을 법률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분업화 등 법률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 소외 계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소규모 법률서비스도 등장했다.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전통적 로펌의 전면적 서비스의 대안으로 법률정보 제공, 소송준비, 제출서면의 작성 등으로 나누어진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소송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사이트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다.²⁵⁾ 이러한 온라인 조력 시스템은 변호사가 무료 또는 소액의 보수를 받고, 이메일 등으로 법률상담을 행한다. 소위 간이법률서비스나 자문도 가능하게 된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문서비스가 일반화되었고, 한국에도 전화법률상담 전문임을 내세우는 법률사무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러한 전화법률상담 전문 법률사무소는 한결같이 전화법률상담, 이메일 상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상당한 경력의 변호사들과의 법률상담임에도 시간

23) Michael Mills,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The State of Play 2016", Thomson Reuters, p.4, <https://www.neotalogic.com/wp-content/uploads/2016/04/Artificial-Intelligence-in-Law-The-State-of-Play-2016.pdf>.

24) 김도훈, 앞의 논문, 223면.

25) Richard Zorza, "Re-conceptu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Ethic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egal Practice: From Threat To Opportunity", 67 Fordham L. Rev. 2659 1998-1999, p.2663.

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소송 수입의 전 단계에 무료로 제공되던 법률상담이 독자적 수익구조로 진화한 것이다. 또 문서작성 대행, 나홀로 소송 클리닉(pro se clinics)과 같은 소규모 분업화 현상도 혁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서비스 간이화·소규모화 현상은 전통적 서비스의 쇠락과 함께 생겨난 것이다. 소규모 법률서비스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주로 변호사와 짧은 대화로 수행되는데, 그 결과 서비스는 별개이고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된다.²⁷⁾

2) 가상로펌(virtual firm)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절감이 필요한데,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수행절차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²⁸⁾ 그런 면에서 가상 로펌이라는 발상은 신선하다. 가상로펌(virtual firm)이 전통적 로펌과 다른 것은 가상공간에서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는 그들이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 시스템이라는 점이다.²⁹⁾ 이러한 가상로펌에서 일할 변호사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업무의 강약조절이 가능한 능력 있는 시니어 변호사가 적합하다. 이러한 가상포럼의 장점으로는 의뢰인에게서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변호사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변호사들마다 일하는 시간이 각기 다른데 많이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반 은퇴상태의 변호사는 적게 일하고, 반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할 변호사는 많이 일하는 구조다.³⁰⁾ 이러한 체제는 가상로펌에서나 가능하다. 과금 체계는 시간제나 성공사례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 시간제로 하다가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면 성공사례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³¹⁾

26) Richard Zorza, *supra* note 25, at 2664.

27) *id.*

28) Amy Duncan, "Innovate, Colaborate, & Serve: Louisiana's 'LIFT'- A Legal Incubator and Accelerator Program Startup Guide", 1 J. Experiential Learning 241 2014-2015, p.254.

29) Joan C. Williams et al., "Disruptive Innovation: New Model of Legal Practice", 67 Hastings L. J. 1 2015-2016, p.60.

30) Joan C. Williams et al., *supra* note 29, at 50.

6. 법률자문 및 소송결과 분석·예측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소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소송의 기대 이익은 소송을 제기한 후 전개되는 상황에 달려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들이 실제 발생할 확률을 예상해 보아야 한다.³²⁾ 피고도 제소를 당한 경우,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송결과를 예측하려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중요 부분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소송의 승소 가능성 예측이다. 이는 법률자문의 형태로도 제공되는데, 이런 소송결과의 예측은 판례, 법령, 법관의 성향, 해당 사건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영역이다. 이러한 소송결과 예측은 인공지능기법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법령, 판례, 논문 등을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최근 판결의 추이 등까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FiscalNote와 같은 리걸테크 기업은 여러 가지 입법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법령의 입법 가능성까지 예측하며 그 예측의 정확도는 90퍼센트를 상회한다.³³⁾ LexMachina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로서,³⁴⁾ 별도로 구축한 방대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지적재산권 소송의 결과 예측에 사용하고 있다.³⁵⁾

7. 대체공급자 등장·아웃소싱

아웃소싱은 기업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경영효과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하던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전개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도 동일한 변화를 겪고 있다.³⁶⁾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31) Joan C. Williams et al., supra note 29, at 50.

32)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496면.

33) <https://fiscalnote.com/why-fiscalnote/about-us/>.

34) Ray Worthy Campbell, "Rethinking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U.S. Legal Service Market", 9 N. Y. U. J. L. & Bus. 1 2012-2013, p.4.

35) Dan Pinningt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elf-driving' lawyer: Better access to justice and lower claims?", Lawpro Magazine Vol.15 no.3, p.15, www.lawpro.ca/magazinearchives.

36) Lauren Verbiscus,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Need For Legal Innovation", 21

서 법률서비스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비용절약과 국가 간 시차를 이용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Dupont의 경우 회사의 문서작업을 필리핀으로 아웃소싱해서 연간 600만 달러를 절약했다.³⁷⁾ 기존 법률 서비스 시스템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고객들의 신속하고 효율적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³⁸⁾ 아웃소싱이 되는 분야는 법률 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데, 이러한 미국에서의 아웃소싱 현상은 미국 로펌들이 더 이상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경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서비스와의 비교 우위 경쟁에 돌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장벽과 법률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해외로의 아웃소싱이 쉽지 않고, 역으로 미국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법률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국내의 대형 로펌 등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다른 변호사나 소형 로펌에 업무 일부분을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사내 변호사나 고비용의 로펌에서 처리하던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 상당 부분이 아웃소싱 되고 있다. Axiom과 같은 곳에서는 창의적인 기술로 대체인력과 가격 모델의 결합을 표방하는 (새로운 모델의 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래 Axiom은 큰 로펌의 퇴출 변호사 등과 사내 법률부서를 연결시켜주는 임시직 취업알선소에 불과했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제공으로, 대침체기를 거치면서도 2011년에 1억 3,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62% 성장을 보였다.⁴¹⁾ 뉴욕 기반의 이 회사는 법률업무의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고, 이부서는 시카고, 휴스턴 등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330명의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회사의 소속변호사는 Hewlett Packard Company를 비롯한 19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이 관리서비스만으로 2011년 회사 수입의 25퍼센트를 올렸다.⁴²⁾ 물론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아웃소싱이 아웃소싱 대상국

Mich. St. U. Coll. L. Int'l L. Rev. 779 2013, p.782.

37) id. at 788.

38) id.

39) id.

40) Drew Combs, "Look out firms, Axiom is trying to beat you at your own game", The American Lawyer, July/August 2012, www.axiomlaw.com/Images/Attorneys/001081201_Axiom.pdf.

41) id.

42) Drew Combs, *supra* note 40.

에서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도 없지 않다. 미국의 아웃소싱의 주 대상국인 인도 같은 경우 자국 내에 외국 로펌의 연락사무소 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인도국민에게 미국에서 법률사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⁴³⁾

Ⅲ. 법률서비스의 특질과 진입규제

1. 법률서비스의 특질

법률서비스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는 상이한 특질이 많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적 해석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권리를 확인하는 서비스로서 사법부, 검찰, 민간인(변호사 등) 등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로 정의되거나,⁴⁴⁾ 또는 법적 문제에 처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법적 조력으로 정의되는데, 그 구체적 형태로는 법적 지식을 제공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법률상담, 분쟁해결방식 제시를 통한 법적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ADR,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등이 있다.⁴⁵⁾ 본고에서는 사적재(private goods)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서비스의 수요는 사회의 경제적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이에 따른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할수록 늘어나게 되며, 공급 또한 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증가하게 된다.⁴⁶⁾

변호사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진 법률전문직이기는 하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보수

43) Lauren Verbiscus, supra note 36, at 802.

44) 문병근·김진근,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후생효과", 「공공경제」 제2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7, 130면.

45) 황승흠,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제4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12, 72면.

46) 문병근·김진근, 앞의 논문, 130면.

도 고가일 수밖에 없다. 고가인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어렵다. 시장 경제시스템에서 충분한 보수 없이 법률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깝다.⁴⁷⁾ 뿐만 아니라 법률 수요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이 항상 문제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한 대가와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 간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이용자보다는 공급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즉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서비스 이용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면은 (서비스 공급자에게)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⁴⁹⁾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변호사 자격제도를 통한 진입장벽의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

통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비용과 법률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많은 잠재적 고객들의 접근 범위 밖에 있다. 법률서비스는 또한 자격제도를 통한 제한된 숫자의 변호사에 의해 개인맞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기존 법률시장지배자의 시선 밖에 있는 시장 주변부의 소비 소외층의 존재는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리걸테크 기업에게 파괴적 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파괴적 진입자가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살린다면 소외계층도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⁵⁰⁾

2. 진입규제

1) 자격제도

변호사 자격제도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minimum

47) 이상돈, “司法的 福祉社會 實現을 위한 法律서비스의 改善方向”, 『법학논문집』 제26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66면.

48) 신흥균, “법률서비스의 통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한국법학원, 2010.12, 843면.

49) 위의 논문, 844면.

50) Michele R. Pistone·Michael B. Horn, “Disrupting Law School: How disruptive innovation will revolutionize the legal world”, <https://www.christens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3/Disrupting-law-school.pdf>.

quality)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즉 정보비대칭성의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규제방식이다.⁵¹⁾ 변호사 직역을 규율하는 목적은 변호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변호사들의 법률문서 작성 오류나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인해 입을 경제적 타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⁵²⁾ 그러나 이러한 자격 제도를 통한 진입 장벽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 ABA는 고객의 신뢰 보호와 이해충돌 감시, 무자격 법률서비스로부터의 공중 보호, 법조직역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일반 법학자들은 그런 노력조차 철저히 평가절하 하였다.⁵³⁾ 변호사 단체의 자율규제를 놓고 사법부가 변호사의 사적 이익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성을 들고 있다는 비판까지 있다.⁵⁴⁾ 반독점법 차원에서 ABA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법률정보와 법률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⁵⁵⁾ 현행 변호사법은 제4조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제7조의 자격등록, 제8조의 등록거부 규정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격 유무 등 등록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

51) 문병근·김진근, 앞의 논문, 128면.

52) Brian Sheppard, "Incomplete Innovation and The Premature Disruption of Legal Service", 2015 Mich. St. L. Rev. 1797, 2015, p.1839.

53) Gillian K. Hadfield, "Legal Barriers To Innovation: The Growing Economic Cost of Professional Control Over Corporate Legal Markets", 60 Stan. L. Rev. 1689 2007-2008, p.1692.

54) id. at 1691.

55) id. at 1693.

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거의 모든 사항을 열거하고 나아가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이라는 표현으로 법률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비변호사가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나아가 이런 규정의 실효성을 잠탈하는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화해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2)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2호에 벌칙을 두고 있다. 나아가 제34조 제1항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입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비변호사가 어떤 형태로든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IV. 파괴적 혁신의 방향과 시사점

1. 파괴적 혁신-보완·대체

법률서비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법률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법률 서비스의 프로세스나 그것이 적용된 기술적 측면과 무관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좌우된다. 법률서비스 모델의 창출은 결국 법률서비스로 제공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또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법률분야의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여도 그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파괴와 혁신이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파괴와 혁신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긴 어렵다. 물론 혁신의 단계를 지나면 파괴가 된다는 식의 파악도 곤란하다.

1) 보완적 혁신

혁신은 기존 방식에 변화를 도모하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혁신은 널리 보급되어 완전히 퍼진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⁵⁶⁾ 물론 어떤 변화가 혁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 하면 혁신이라고 보이는 어떤 변화의 결과로 인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즉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의 결과가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으로 인해 순량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실례로 TV가 얇아지고 가벼워진 반면, 색상도가 감소한 경우에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⁵⁷⁾

기존의 시장지배자의 지위보존이 전제되는 지속형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은 고가품 위주의 고급 계층을 공략하지만 시장지배자의 주된 기반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형 혁신의 경우에도 가끔 기존 제품과 전혀 다른 특질, 성능, 가격 속성을 지닌 제품을 내놓는다. 이러한 제품은 주류 소비층에게는 외면당하지만 특정 소비층의 경우 이러한 제품에 가치를 부여한다.⁵⁸⁾ 혁신으로 인해 동일한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기도 하고 기존 시장지배자로부터 외면당했던 새로운 소비계층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주도자들은 기존 시장지배자와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생존이 가능하다. 시장지배자들은 잠재적 단계의 파괴적 혁신에 대해 별반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혁신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심지어 혁신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들의 시장 주도적 제품과 경쟁할 것이라고 자각하지도 못한다.⁵⁹⁾ 법률분야에서의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창출과 유지로 구분

56) Brian Sheppard, *supra* note 52, at 1810.

57) *id.*

58) *id.* at 1811.

된다. 법률서비스의 경쟁우위는 결국 그 서비스가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느냐와 비용 측면에서 어떤 우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상보적(相補的)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속형 혁신은 소위 변호사업계의 슈퍼스타에게는 그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⁶⁰⁾ 또 지속형 혁신을 수용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조직을 바꾸게 되면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그 덕분에 중간계층의 사람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새로운 소비자로 끌어들이 수 있게 된다.⁶¹⁾ 이러한 혁신은 일반 변호사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⁶²⁾

2) 파괴적 대체

지속형 혁신의 경우 시간이 거듭될수록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중간 레벨의 사용자에게도 어필하게 되면서 파괴적 혁신으로 변모하고 점차 시장 지배자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게 된다. 그 와중에 파괴적 혁신은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기존의 시장지배자가 그것을 자각하게 될 때쯤에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⁶³⁾ 이런 파괴는 기존 서비스의 지속을 전제하지 않는다.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로 혁신이 이루어진다. 혁신이 지속형 혁신인 반면 파괴는 대체적이다. 파괴의 대상이 된 기존 법률서비스는 아예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법률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와 전혀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체한다. 기존의 시장지배자들도 지배적 지위만 상실한 채 잔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⁶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려하는 변호사의 직업 상실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파괴적 대체 때문에 일어난다.

59) Brian Sheppard, *supra* note 52, at 1812.

60) John O. McGinnis·Russell G. Pearce, “The Great Disruption: How Machine Intelligence Will Transform The Role of Lawyers In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 82 *Fordham L. Rev.* 3041, 2013-2014, p.3042.

61) John O. McGinnis·Russell G. Pearce, *supra* note 60, at 3042.

62) *id.*

63) Brian Sheppard, *supra* note 52, at 1812.

64) *id.*

2.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모델과 수용

법률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변화는 법률시장에서의 생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는 변호사가 직업이 아닌 사업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⁶⁵⁾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측면의 우위는 기존 법률서비스 모델의 해체를 통한 기존 법률서비스와의 차별화에 달려있다. 종전의 법률서비스의 특징인 일관서비스는 신뢰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고비용 문제는 누누이 지적되는 바이지만, 법률서비스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원을 통해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서비스 진입장벽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 영역을 온전히 변호사들의 수중에 두는 것은 비관을 불러오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시장보호책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소극적 시장보호책은 한계가 있다. 법률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방법, 즉 변호사 숫자 제한은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겠지만, 소송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다.⁶⁶⁾ 소송건수는 전반적 경제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소송건수의 증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외부여건 변화와 별개로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정체나 위축 상태의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플랫폼 이용, 서비스 분업화인데 이는 모두 기존 서비스의 유지를 전제한 혁신의 범주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서비스 프로세스를 아웃소싱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특정 서비스 프로세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도 생겨나야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기존 법률서비스의 운영 효율도 높이는 일방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시장 위축이나 과다경쟁 등 법률시장이 처한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다.

65) Robert D. Cooter·Thomas Ulen/한순구역, 앞의 책, 506면.

66) 위의 책, 507면.

1) 인터넷 플랫폼 이용 서비스 확대 전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러한 플랫폼 없이는 불가능했던 각종 서비스 모델의 구현이 가능해졌고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비변호사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변호사가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직접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고, 대부분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에 의하여 개발되고,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경우,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 109조가 이런 서비스 제공 모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법률서비스의 장점에 대하여 누누이 설명한 있지만, 이 서비스 유형은 매우 효율적일 뿐 아니라, 법률 소외 계층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등 긍정적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다양한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전면 금지하는 위 변호사법 규정을 리걸테크 기업에 의한 서비스 유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탈법적인 서비스 제공이 횡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2)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약한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일을 컴퓨터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이런 관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 법률사무소의 모든 업무나 어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이 수행케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 전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현재로는 요원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방향의 혁신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인공지능변호사로 오인된 미국의 ROSS는 파산분야라는 국한된 분야의 법률검색에 있어서는 인간전문가를 훨씬 능가하는 수행능력을 보인다. 이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파괴적 혁신의 요체다. 종래 변호사가 담당하던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비용조차 저렴한 분야가 있다면 굳이 그런 업무를 변호사로 하여금 직접 처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변호사는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 능률을 제고해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절대 담당할 수 없는 변호사만의 고유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정형화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행능력을 보이지만, 변호사처럼 의뢰인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원치 않는 의뢰인을 설득할 수는 없고⁶⁷⁾ 법정에서 나가서 구술 변론을 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대립적 위치에 놓을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모델이 주는 혁신의 수혜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리걸테크가 법률서비스 제공자이나 하는 문제와 그런 문제가 우리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입장벽과의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를 조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우리 변호사법이 열거하고 있는 법률사무와 무관하고, 설사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모델 중 주 고객층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법률서비스가 있다. 바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문서자동 작성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법률관계문서 작성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는 법무사법이 금지하고 있다(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3) 법률서비스의 분업화 전략

전통적 일관 서비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인 고비용 문제를 서비스 분업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래 일반 노동시장의 경우 분절현상이 관찰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기업 종사자와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높은 중심부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의 주변부 노동시장을 이분화된 분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⁶⁸⁾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분야도 가치집약적인 중심부 서비스 영역

67) John O. McGinnis·Russell G. Pearce, supra note 60, at 3042.

68) 김영미,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

과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가 가능한 주변부 서비스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통상 전관예우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행해지고 있지만, 전관예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집약적 서비스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영장전담판사가 개업한 경우, 이 변호사가 영장관련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자신이 평소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판사에서 변호사라는 역할만 바뀐 채 관여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여타 변호사와 차별된다는 점에서 경향성의 관점에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전관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처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관 변호사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에 기한 신뢰제공을 더 기대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치 집약적 서비스 영역은 여타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서비스는 그것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가치 또는 신뢰제공을 핵심요소로 하는 법률서비스가 아니라면 인공지능이나 다른 변호사에 의한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업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생겨난다면 이러한 변호사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의 일반 노동시장의 분절과 유사한 측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서비스 분업화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관여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 이런 서비스 분업에 관여할 경우, 변호사범위반의 문제는 당연해 보인다. 비변호사가 운영하는 리걸테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4) 법률서비스의 아웃소싱(Legal outsourcing)

우리나라에 Axiom과 같은 회사처럼 아웃소싱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걸테크 기업이 생겨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우리나라라고 해서 비용절감 모델인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업 규제 관련 법률 이외에도 변호사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리걸테크 기업의 운영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곳에

성 차별의 차이”, 『경제와 사회』 통권 제106호, 비판사회학회, 2015.6, 206면.

고용된 변호사와의 동업이 문제될 것이고, 소속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로의 아웃소싱은 법률사무의 수입에 관하여 소개·알선을 규제하는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V. 결론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은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법률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이 선보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법률서비스는 법률분야 혁신의 아이콘으로까지 여겨진다. 본고에서 이런 리걸테크 산업의 각종 법률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나아가 그런 서비스의 수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법률서비스는 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성, 신뢰제공 등 다른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을 지니고 있고, 그 점 때문에 변호사법 등 법률로 그 서비스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는 최근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에 의한 끊임없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직역과의 분쟁 외에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서비스의 혁신 또한 법조 직역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각종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소극적 입장에 섰다가는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변화와 혁신을 제도적 장치의 틀 안에서 적극 수용하여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자세야말로 4차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덕목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 2017.05.20. / 심사완료일 : 2017.06.07. / 게재확정일 : 2017.06.15.

[참고문헌]

- Robert D. Cooter·Thomas Ulen/한순구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 김도훈,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대한 연구-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2.
- 김영미,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잡성-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의 차이”, 「경제와 사회」 통권 제106호, 비판사회학회, 2015.6.
- 문병근·김진근,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후생효과”, 「공공경제」 제2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7.
- 신홍균, “법률서비스의 통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한국법학원, 2010.12.
- 안정혜,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8.
- 이상돈, “司法的 福祉社會 實現을 위한 法律서비스의 改善方向”, 「법학논문집」 제26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황경환, “미국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의 증거개시제도의 연구”, 「한양법학」 제22집, 한양법학회, 2008.2.
- 황승흠,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제4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12.
- Amy Duncan, “Innovate, Collaborate, & Serve: Louisiana’s ‘LIFT’- A Legal Incubator and Accelerator Program Startup Guide”, 1 J. Experiential Learning 241 2014-2015.
- Brian Sheppard, “Incomplete Innovation and The Premature Disruption of Legal Service”, 2015 Mich. St. L. Rev. 1797 2015.
- Dan Pinningt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elf-driving’ lawyer: Better access to justice and lower claims?”, Lawpro Magazine Vol.15 no.3, www.lawpro.ca/magazinearchives.
- Disruptlegal, “LawGeex: Free, Easy-To-Use Contract Review Software”, <https://disrupt.legal/2016/06/07/lawgeex-free-easy-to-use-contract-review-software/>.
- Drew Combs, “Look out firms, Axiom is trying to beat you at your own game”, The american Lawyer, July/August 2012, www.axiomlaw.com/Images/

Attorneys/001081201Axiom.pdf.

- Drew Simshaw, "Robot Lawyers: Improving Access To Justice With Renewed Commitment To Ethical Obligations", <http://www.werobot2017.com/wp-content/uploads/2017/03/Sims-haw-Robot-Lawyers-DRAFT-2017-03-20-1.pdf>.
- Gillian K. Hadfield, "Legal Barriers To Innovation: The Growing Economic Cost of Professional Control Over Corporate Legal Markets", 60 *Stan. L. Rev.* 1689 2007-2008.
- Joanna Goodman, "Meet the robot lawyers and virtual assistants", *RACONTEUR* 29/06/2016.
- Joan C. Williams et al., "Disruptive Innovation: New Model of Legal Practice", 67 *Hastings L. J.* 1 2015-2016.
- John O. McGinnis-Russell G. Pearce, "The Great Disruption: How Machine Intelligence Will Transform The Role of Lawyers In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 82 *Fordham L. Rev.* 3041 2013-2014.
- Lauren Verbiscus,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Need For Legal Innovation", 21 *Mich. St. U. Coll. L. Int'l L. Rev.* 779 2013.
- L. Thone McCarty, "AI and Law: How to Get There from Here", *Ratio Juris.* Vol. 3. No.2 July 1990.
- Matthew Young, "To Cure the E-Discovery Headache, Revamp the Rule 26(f) Discovery Conference", 12 *Nw. J. & Intell. Prop.* I 2014.
- Michael Mills,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The State of Play 2016", Thomson Reuters, <https://www.neotalogic.com/wp-content/uploads/2016/04/Artificial-Intelligence-in-Law-The-State-of-Play-2016.pdf>.
- Michael Mills, "Using AI In Law Practice: It's Practical Now", 42 *Law Prac.* 48 2016.
- Michele R. Pistone·Michael B. Horn, "Disrupting Law School: How disruptive innovation will revolutionize the legal world", <https://www.christenseninstitutue.org/wp-content/uploads/2016/03/Disrupting-law-school.pdf>.
- Nicholas Barry, "Man Versus Machine Review: The Showdown between Hordes of Discovery Lawyer and a Computer-Utilizing Predictive-Coding Technology", 15 *Vand. J. Ent. & Tech. L.* 343 2012-2013.
- Richard Zorza, "Re-conceptu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Ethic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egal Practice: From Threat To Opportunity”, 67 Fordham L. Rev. 2659 1998-1999.

Ray Worthy Campbell, “Rethinking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U.S. Legal Service Market”, 9 N. Y. U. J. L. & Bus. 1 2012-2013.

Robert J. Ambrogi, “A Golden Age of Legal Tech Start-Ups”, 43 Law Prac. 34 2017.

Simon Canick, “Infusing Technology Skills into The Law School Curriculum”, 42 Cap. U. L. Rev. 663 2014.

Taryn Marks, “John West and the Future of Legal Subscription Databases”, 107 Law Libr. J. 377 2015.

Wefunder, “CASETEXT making all the world’s laws free and understandable”, <https://wefunder.com/casetext>.

[국문초록]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 종 모*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은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입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파괴적 혁신, 법률검색 서비스, 온라인 법률상담, 전자증거개시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Innovation on Legal Service and Its Implications

Yang, Jong-Mo*

It is anticip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or will cause devastating innovation in many areas. Legal services can not be an exception. When innovations happen faster than customers expect, they survive, or they do not. Disruptive innovation explains why an organization is hard to survive without chan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novation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on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services by complementing existing legal services, and the one that completely replaces existing services. The feature of the legal service field is high cost and difficult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his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advanced empi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only a limited degree of access to legal services. In Korea, too, a policy of inducing low-priced legal services throug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lso a lot of side effects such as bad debts caused by low price competition or legal brokers. Legal service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at they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other qualities, in particular abiding by norms and handling all kinds of tasks properly. With the fear that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will damage this trust relationship, some people are demanding that the lawyer supply be limited to an adequate level.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services has raised concerns about changes in the lawyer's pos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

*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significant portion of existing lawyers with computers and that many lawyers will be destined to lose their jobs. In the meantime, innovation in legal services is slower than in other areas, bu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celerate such innov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various changes of legal service innov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spects. Although the existing legal services market has been centered on trust, intimacy, social evaluation,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clients, various innovations such as small-scale and division of legal servi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uch legal services and such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stomer's profit and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While there is still a little short in the way at this stage, but continu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we approach and deliver legal services.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 Legal Profession, Legal Research, Online Service, Predictive Coding

